

고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983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8. 22.

이정숙 의원 등 6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5. 8. 29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5. 9. 10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이정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최근 우리사회 전반에 국기게양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저하되고 있으며, 특히 국경일임에도 국기게양률이 낮고 태극기 보유하지 않은 가정 이 많은 것이 현실임.
- 본 조례는 이러한 현실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성군민들의 국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기 사랑문화를 확산하여 고성군 전역에 국기 게양에 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2)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국기게양일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3) 국기보급사업 및 국기선양 사업,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~제7조)
- 4) 국기의 점검 ·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다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

- 「대한민국국기법」

2)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3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42호

- 예고기간: 2025. 8. 22.(금) ~ 8. 28.(목)[6일간]
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○ 본 제정조례안은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8조(국기의 게양일 등)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성군 국기 게양일 지정과 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○ 제정 취지(적정성/타당성)

- 제정안은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8조(국기의 게양일 등) 상위법령에서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「고성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」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○ 조례안 구성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

- (안 제1조~제3조) 조례의 목적과 정의, 다른 조례와의 관계

- (안 제4조) 고성군의 국기 게양일에 관한 사항

- (안 제5조~제7조) 국기 보급사업, 국기선양사업, 민간 지원 근거 마련.

다만, 무상 보급을 통해 국기를 보유할 수 있는 세대가 늘어난다는 측면에는 의의가 있으나 보급 기준, 절차, 횟수, 중복지원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세부 추진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- (안 제8조) 국기의 정기 점검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정함

○ 종합 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5조, 제8조, 제12조,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기의 존엄 및 국기선양 활동을 위하여 고성군의 국기 게양일 지정과 국기의 관리 및 선양사업 추진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,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9. 10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